

第7章 結論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시장개방과 OECD가입에 따른 국제화 및 금융의 자유화추세 속에서 無限競爭時代에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위 船團行政에 의해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책임경영과 시장경쟁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우리 보험산업으로서는 보험감독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격변기의 새로운 保險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시장경쟁체제에 익숙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발전과정, 특히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급능력규제정책 및 파산에 대한 미국 보험감독당국의 대응정책 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敎訓과 示唆點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중에서도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원인, 즉 ① 불충분한 손해준비금 ② 급속한 성장 ③ 보험사기사건 ④ 자산의 과대표시 ⑤ 대재난손해,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요인인 ① 부적절한 보험가격과 잉여금 ② 급속한 성장 ③ 계열회사문제 ④ 자산의 과대표시 등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게는 미국의 대형 4개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요인인 ① 급속한 성장 ② 고위험 자산에의 투자집중 ③ 잉여금의 감소 ④ 경영과 내부통제의 취약성 등 역시 우리 생보업계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파산요인들을 事前에 차단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책임체제를 보장하면서 지급능력규제에 보험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保險規制와 監督政策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업의 지도·육성이라는 말 대신에, 競爭의 促進과 支給能力의 確保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의 자유화추세 속에 추진되고 있는 保險價格의 自由化 및 投資의 自由化는 再考되어야 한다. 보험가격의 자유화가 아닌 경쟁요율화를 지향하여야 하지만, 보험회사의 지급능력과 직결되는 보험가격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投資의 效率性を 촉진하면서도 保險資産의 安定性を 제고하기 위해 지급능력에 직접 위협이 되는 不實投資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시장의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規制의 透明性이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압력은 차치하고라도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규제의 투명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보험회사 경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많은 규정들이 보다 客觀的이고 具體的인 基準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